

보험금액의 산정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90년 9월 18일 보험 계약자 A와 보험자 B 사이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덕평리 소재의 건물 및 동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기계에 대하여 보험금액 건물 2억1천만원, 기계 6억1천만원, 보험 기간은 1990년 9월 8일부터 1991년 9월 8일까지 1년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91년 5월 20일 위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로 위 보험의 목적물이 소손되었는데, 지급 보험금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생겨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2. 서로의 이견

신청인 C는 본건 보험 증권에는 보험 목적물의 표시로 기계라고 되어 있는 보험금액이 6억1천만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기계별로 보험금액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기계별 보험금액은 화재보험 약관 제13조 4항에 따라 화재 당시 존재한 기계에 대해 산정한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기계 가액의 비율로 보험금액을 안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동력간선의 피해는 기계 손해에 해당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건물 손해로 보아 기계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 B는 보험 계약자 A가 감정서상의 물건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요청하였고, 보험 증권에 첨부된 감정서에는 해당 기계의 명세가 있으며, 각 개별 기계마다 감정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각 기계별 감정 금액을 각 기계의 해당 보험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본건과 같이 총 감정 금액과 총 보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정 금액 총액과 보험금액 총액과의 비율로 개별 기계의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건 보험 계약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화재 보험 목적물 상공장의 동력간선은 건물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변전 설비는 기계 기구에 해당되므로 동력간선 공사에 대하여는 건물 손해액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심의

동 사안을 심의한 조정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하였다.

「...본건 보험 계약 청약서 및 보험 증권에 의하면 본건 보험의

목적물인 기계는 철근 콘크리트조 스타브룸 1층 건물내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기계에 대하여 6억1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감정 가격에 비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임을 인정할 기계가 전혀 없고, 감정 평가서의 기계 명세와 사고 발생 당시에 위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던 기계 명세와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감정 평가서상의 감정 금액이 보험가액의 협정 금액인지 아니면 보험금액인지 또는 참고로 첨부된 것인지 불명하여, 이를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 금액이 보험금액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각 기계에 대한 감정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위 청약서나 보험 증권에 명백하게 기재되거나 또는 각 기계 및 이에 대한 보험금액을 정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약서 및 보험 증권에 첨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보험 계약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물을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보험 계약의 보통보험 약관 제13조4항에 따라

기계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안분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력간선 공사가 건물 공사의 일부인지 아니면 변전 설비공사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화재 사고 손해사정 보고서에 의하면 동력간선 공사는 건물 공사의 일부로 보아 동력간선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동력간선은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동력간선 공사에 따른 손해액을 건물 손해의 일부로 보아 보험금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달리 반증없다.…」

4. 맺는 글

보험 계약은 부합 계약적 성질상 불특정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반복적·대량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하여 보험 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여 둔 정형적·표준적 계약 조항이라 할 수 있는 보험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여 체결되고 있다.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표준적·정형적 계약 내용인 보통 보험 약관과 보통보험 약관의 특정 조항을 변경·배제하거나 보통 보험 약관에는 없는 내용을 보충

하는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 약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별 약관은 그것이 정형적 표준적인 실질적으로는 보통보험 약관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험 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약관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보험 계약자는 약관의 내용을 모르고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 약관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일반 거래 약관과 마찬가지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는 보험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서 구할 수 있고, 약관 편입의 합의는 약관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동 합의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가 약관의 개별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국 동 약관 내용은 보험 계약의 해석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험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약관 내용과 다른 약정을 한 때에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약정이 보험 약관에 우선하는 것이다.

두개 이상의 물건을 보험 목적

으로 할 경우, 개별 물건마다 보험금액을 정하여 개별·단일 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겠고, 포괄 계약으로 하여 다수의 집합 물건을 하나의 보험금액으로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보험 청약서나 보험 증권에는 하나의 보험금액과 보험 목적이 건물내에 수용된 기계 일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한 본건 보험 계약은 포괄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감정 평가서상의 개별 기계에 대한 감정 금액을 보험금액(개별·단일 계약)으로 한다는 개별 약정이 있으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감정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 증권에 감정 평가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동 감정 평가서상의 감정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감정 금액과 보험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음), 계약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사리 감정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집합된 물건 전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할 경우 개개의 물건에 대한 보험금액을 정하여 놓지 않는 한, 포괄 계약으로 보고 화재 보험 약관 제13조 4항에 따라 전체 가액에 대한 각 보험 목적의 가액 비율로 보험금액을 안분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㉞